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3-68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3. 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개정에 따른 변경 규정을 반영하고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4조, 제5조)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제3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

나. 사용 표현 순화(안 제2조)

다. 상위법 당연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6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(재정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4. 13. ~ 5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회의 결과: 수정의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재향군인”이란”으로,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”을 ““재향군인회”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제3항”을 “법 제16조제2항”으로 한다.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재향군인</u>”이라 함은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<u>자</u>를 말한다.</p> <p>2. “<u>재향군인회</u>”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회”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예산지원)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이라 한다)은 <u>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지원대상사업) <u>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제6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<u>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</u>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재향군인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 <u>사람을</u> -----.</p> <p>2. “<u>재향군인회</u>”란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예산지원) ----- ----- <u>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지원대상사업) <u>법 제16조제2항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|

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민준호 |
| 연 락 처 | 02-3153-8331 |